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동물의 법적 지위 및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 규정 >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4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동물의 법적 지위 규정(안 제98조의2 신설) .....         | 3  |
| 2.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 마련(안 제764조의2 신설) ..... | 11 |
| IV . 관계기관 의견 .....                         | 16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11.
3. 회 부 일 : 2024. 6. 1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물 학대·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미 해외에서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현대적 동물권 운동과 동물권 논쟁의 영향으로 동물을 권리의 객체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오스트리아·독일·스위스 등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과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으로 구분하는 2원적 체계가 아닌 인간과 동물,

그리고 물건이라는 3원적인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의 경우와는 달리,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고자 함(안 제98조의2, 제764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동물의 법적 지위 규정(안 제98조의2 신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sup>1)</sup>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에 포함됨.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br>②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가. 동물의 법적 지위<sup>2)</sup>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① 사람이 소유하는 특수한 물건으로서의 지위, ② 생명체라는 관념에서 동물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③ 애호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sup>3)</sup>.

1)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이하 윤철홍,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2018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8. pp.80~87.; 홍진화·김판기, 「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52호, 2017.5., pp.141~145. 정리

3) 한편, 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물 소유자의 이름이 아닌 동물 자신의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① 특수한 물건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권리를 가지는 주체와 권리의 대상인 객체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데,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므로 동물을 포함한 물건은 권리의 객체에 해당함.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현대적 동물권 운동과 동물권 논쟁의 영향으로 동물을 권리의 객체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두기 시작했음.

② 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동물은 일반적인 물건과는 다르게 생명이 있으므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에 그와 같은 정신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③ 애호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은 보호해야 하는 복지의 대상인 동시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 있어, 자동차와 같은 다른 물건이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과는 달리 취급되고 있음. 2020. 2. 11.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금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등록제 등을 아울러 마련하고 있음.

---

청구할 수 있는지(동물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논의도 있음(홍진희·김판기, 「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52호, 2017.5.).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관련 법률 중에서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동 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로서 ①포유류, ②조류, ③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종의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관리,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정의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음.

그 밖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개별 법에서도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동물의 정의, 규율 대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동물에 관한 정의 규정

- 「동물보호법」<sup>4)</sup> :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①포유류, ②조류, ③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sup>5)</sup>: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sup>6)</sup> :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
- 「가축전염병 예방법」<sup>7)</sup> :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참고로, 현재 동물과 관련된 법률로는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동물보호법」 외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검역법」, 「공중위생관리법」, 「낙농진흥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부처 소관의 20여개의 법률들로 산재되어 있는바, 동물과 관련된 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법률을 체계화하기 위해 동물의 개념 및 분류, 법적 지위, 동물의 관리와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내용, 동물 관련 부서의 조정 및 컨트롤타워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물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sup>8)</sup>

4)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5)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

## 나. 해외 입법례

오스트리아는 1988년 3월 10일 민법 제285a조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항을 민법전에 신설하였음.

독일은 오스트리아 민법의 개정 태도를 수용하여 1990년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동물에 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밖에 동물 소유자의 동물보호 규정 준수 의무, 압류금지 등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음.

스위스는 2002년 민법 개정을 통해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해서는 물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프랑스는 민법에서 “동물은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이 논의될 당시 법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사람과 재산 사이에 중간 범주를 만드는 것을 피하면서도 감각 있는 존재로서 동물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이 지적된 바 있음.

---

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홍진희·김관기, 「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52호, 2017.5., pp.146~149.

## 참고 2

## 해외 입법례

|          |    | 원문                                                                                                                                                                                                                                                                                                                                                 | 번역                                                                                                                                                |
|----------|----|----------------------------------------------------------------------------------------------------------------------------------------------------------------------------------------------------------------------------------------------------------------------------------------------------------------------------------------------------|---------------------------------------------------------------------------------------------------------------------------------------------------|
| 오스트리아 민법 |    | § 285a.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sind auf Tiere nur insoweit anzuwenden, als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bestehen.                                                                                                                                           | 제285조의a.<br>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물에게 적용된다.                                                                |
| 독일 민법    |    | § 90a Tiere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Auf sie sind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ist.                                                                                                                                            | § 90a 동물<br>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br>그에 대하여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          |    | § 903 Befugnisse des Eigentümers Der Eigentümer einer Sache kann, soweit nicht das Gesetz oder Rechte Dritter entgegenstehen, mit der Sache nach Belieben verfahren und andere von jeder Einwirkung ausschließen. Der Eigentümer eines Tieres hat bei der Ausübung seiner Befugnisse die besonderen Vorschriften zum Schutz der Tiere zu beachten. | 제903조 소유자의 권능<br>물건의 소유자는,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에 반하지 아니 하는한, 물건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고 또 타인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할 수 있다. 동물의 소유자는 그 권능의 행사에 있어서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스위스      | 민법 | Art. 641a<br>1 Tiere sind keine Sachen.<br>2 Soweit für Tiere keine besonderen Regelungen bestehen, gelten für sie die auf Sachen anwendbaren Vorschriften.                                                                                                                                                                                        | 제641조의a<br>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br>2. 동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          | 형법 | Dritter Teil: Begriffe<br>Art. 110<br>3bis Stellt eine Bestimmung auf den Begriff der Sache ab, so findet sie entsprechende Anwendung auf Tiere.                                                                                                                                                                                                   | 3장 용어<br>제110조<br>3bis항 어떠한 규정이 물건에 적용되는 경우, 이는 동물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
| 프랑스 민법   |    | Livre II :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br>Article 515-14<br>Les animaux sont des êtres vivants doués de sensibilité. Sous réserve des lois qui les protègent, les animaux sont soumis au régime des biens.                                                                                                          | 제2권 재산과 소유권의 변동<br>제515-14조<br>동물은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 동물은 이를 보호하는 법률의 유보 아래 재산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자료: 이재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2021.12.15., 입법조사처

## 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의 취지는 생명을 가진 동물에 대하여 물건과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책임과 보호 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독일 등 해외 입법례에서도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든 동물의 물건성을 부정하는 개정안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 동물의 권리 객체성 및 물건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모든 동물에 대하여 비물건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여건이 마련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동물의 물건성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는 긍정론과 부정론 등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긍정론을 살펴보면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인 재물손괴죄로 처벌되고, 동물의 상해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원칙적으로 시장의 교환가치만이 기준이 되는 한계가 있는데, 동물의 비물건성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동물 관련 분쟁에 있어 해석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규정과 상충 되는 법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임.

예를 들어 반려동물 살상 시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용과 위자

료를 배상받을 수 있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혼 또는 상속 시 동물의 보호자를 지정할 때 재산의 분할 대상이 아닌 적절한 양육 및 보호의 관점에서 고려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임.

더욱이 2018년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물건을 규정할 때 물건과 동물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 역시 긍정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반면, 부정론은 현실적으로 동물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산업 및 분쟁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실질적인 동물의 보호는 「동물보호법」 등 다른 구체적인 공법과 형법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은 동물의 비물건화 조항은 구속력 없는 형성가능성이나 목표방향만을 열어놓는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임.

또한, 동물이 물건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 등으로 동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출이 증가하고<sup>9)</sup> 보험료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는 등 동물이 물건이 아닐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

9) 양승현,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입법론과 보험업 관련 영향 검토”,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2021.8.23.

현행 「형법」상 재물 개념은 「민법」상 물건 개념에 일치되게 해석해왔는데 동물이 민법상 물건이 아니고 이에 따라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고 볼 경우 재물손괴죄 외에도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권리행사방해와 같은 죄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sup>10)</sup>이 존재함.

## 2.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 마련(안 제764조의2 신설)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문제는 수의료 과오, 교통사고 등의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sup>11)</sup>인데, 개정안은 이처럼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손해배상 특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10) 이재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2021.12.15., 입법조사처

11) 홍진희·김관기, “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법률문제”, 재산법연구 제39권제1호(2022.5)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 문제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산정 시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사고의 유형 및 관련 보험

| 구분            | 책임의 주체                | 사고의 유형 | 관련 보험                       |
|---------------|-----------------------|--------|-----------------------------|
| 반려동물<br>산업종사자 | 동물병원 수의사              | 수의료 과오 | 동물병원 배상책임보험<br>수의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
|               | 사료등 제조회사              | 물건의 결함 | 제조물배상책임보험                   |
|               | 반려동물 미용실, 카페,<br>호텔 등 | 각종 사고  | 영업배상책임보험                    |
| 기타            | 반려동물 소유               | 개물림 사고 | 반려동물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br>맹견책임보험 |
|               | 운전자                   |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764조의2(동물에 대한 특칙) ①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②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p> |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sup>12)</sup>하고 있는데, 판례는 “물건”이 파괴되었을 때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물질적 손해에 한정<sup>13)</sup>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물건을 상실함으로써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 현행법 상 동물 역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죽음 역시 시장에서의 교환가격을 넘는 배상 또는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운 실정임.

- 12)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13) 홍진희·김판기, “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법률문제”, 재산법연구 제39권제1호(2022.5)  
소유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 당시 그 물건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통상손해로 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면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가 통상손해로 된다. 그리고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이른바 시세하락 역시 최근에는 통상손해로 본다.

다만, 하급심 법원에서 동물의 물건성을 인정하면서도 애완견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그 애완견과 서로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① 강아지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와 ②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시장에서의 교환가치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인정<sup>14)</sup>한 사례가 있음.

개정안은 반려동물에 대해 교환가치 이상의 치료비와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또한,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역시 민법에서 교환가치 이상의 치료비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 역시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개정안의 조문만으로는 반려동물의 치료비와 소유자의 위자료를 통상손해로 인정하는 것인지 특별손해에 해당할 때 인정하는 것인지 그 문구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법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15)</sup>.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21. 선고 2010가단414531 판결

“물건의 멸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통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고 그로써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나, 애완견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그 애완견과 서로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 이를 소유한다는 점,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5) 법원행정처는 반려동물 소유자(점유자)가 반려동물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를 해태하고 방치함으로써 반려동물이 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반려동물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개정안의 특칙을 특별손해로 보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고, 통상손해로 보는 경우 책임제한사유가 되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음.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모두 주장·입증해야 특별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인 반면, 반려동물이 사상을 입으면 동물소유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으리라는 것은 사회에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의 사상으로 인한 위자료는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음<sup>16)</sup>.

또한, 반려동물을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규정하였는데,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정의<sup>17)</sup>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특칙을 적용받는 반려동물을 다른 동물과 어떻게 구분하여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추가로, 손해보험협회는 동물치료의 경우 현재 표준화된 수가기준 등이 부재하여 동일한 상병의 치료임에도 지역·병원별로 진료비용 및 치료기간·횟수 등이 상이한데 이러한 표준수가 없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한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경우 과잉진료 및 청구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불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6) 홍진희·김관기, “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법률문제”, 재산법연구 제39권제1호(2022.5)

17)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          | 원문                                                                                                                                                                                                                                                                                                                                                                                                                                                                                                                                       | 번역                                                                                                                                                                                                                   |
|----------|------------------------------------------------------------------------------------------------------------------------------------------------------------------------------------------------------------------------------------------------------------------------------------------------------------------------------------------------------------------------------------------------------------------------------------------------------------------------------------------------------------------------------------------|----------------------------------------------------------------------------------------------------------------------------------------------------------------------------------------------------------------------|
| 오스트리아 민법 | § 1332a. Wird ein Tier verletzt, so ebühren die tatsächlich aufgewendeten Kosten der Heilung oder der versuchten Heilung auch dann, wenn sie den Wert des Tieres übersteigen, soweit auch ein verständiger Tierhalter in der Lage des Geschädigten diese Kosten aufgewendet hätte.                                                                                                                                                                                                                                                       | 제1332조의a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합리적인 동물보유자가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 또는 치료를 시도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비록 그 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배상되어야 한다.                                                                          |
| 독일 민법    | § 251 Schadensersatz in Geld ohne Fristsetzung<br>(1) Soweit die Herstellung nicht möglich oder zur Entschädigung des Gläubigers nicht genügend ist, hat der Ersatzpflichtige den Gläubiger in Geld zu entschädigen.<br>(2) Der Ersatzpflichtige kann den Gläubiger in Geld entschädigen, wenn die Herstellung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n Aufwendungen möglich ist. Die aus der Heilbehandlung eines verletzten Tieres entstandenen Aufwendungen sind nicht bereits dann unverhältnismäßig, wenn sie dessen Wert erheblich übersteigen. | 제251조 즉시의 금전배상<br>(1)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채권자의 전보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배상의무자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br>(2) 원상회복이 과도한 비용지출에 의하여만 가능한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는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다. 피해 입은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동물의 가액을 현저히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그 비용지출이 과도한 것이 되지는 아니한다. |
| 스위스 민법   | Art. 42<br>1 Wer Schadenersatz beansprucht, hat den Schade zu beweisen.<br>2 Der nicht ziffernmässig nachweisbare Schaden ist nach Ermessen des Richters mit Rücksicht auf den gewöhnlichen Lauf der Dinge und auf die vom Geschädigten getroffenen Massnahmen abzuschätzen.<br>3 Bei Tieren,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Vermögens- oder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können die Heilungskosten auch dann angemessen als Schaden geltend gemacht werden, wenn sie den Wert des Tieres übersteige.                         | 제42조<br>1.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손해를 증명하여야 한다.<br>2. 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손해는 사물의 통상적인 경과와 피해자가 취한 조치를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그 액수를 산정한다.<br>3.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업적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의 경우에는 그 치료비가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적절한 손해로서 청구될 수 있다.              |
|          | Art. 43<br>1 Art und Grösse des Ersatzes für den eingetretenen Schaden bestimmt der Richter, der hiebei sowohl die Umstände als die Grösse des Verschuldens zu würdigen hat.<br><br>1bis Im Falle der Verletzung oder Tötung eines Tieres, das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Vermögensoder Erwerbszwecken gehalten wird, kann er dem Affektionswert, den dieses für seinen Halter oder dessen Angehörige hatte, angemessen Rechnung tragen.                                                                                         | 제43조<br>1.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방법과 액수는 법관이 과책의 상황과 정도를 고려하여 정한다.<br>1bis항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업적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법관은 동물이 그 보유자 또는 그(가족)구성원에 대하여 갖는 애호 가치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

#### IV.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적극 반영하도록 민법을 개정하여 생명존중사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동물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법체계와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임.

동물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가해진 경우 배상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일반원칙인 신의칙이나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규정(민법 제751조제1항) 또는 특별한 사정(민법 제393조제2항)을 근거로 초과 치료비 또는 위자료의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반대해석상 반려동물이 아닌 동물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초과 손해 또는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법원행정처는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유정물(有情物)인 동물을 무정물(無情物)과 구분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수긍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현행 민법상 이분적인 권리 분류 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

칙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54 |